

소방공사 분리도급 관련 주요 질의회신



Q&A

‘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’ 법안 적용 시점은?

법 시행일(20. 9. 10)부터 발주(입찰)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 부터 적용합니다.

소방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는 하도급하지 못하는지?

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된 경우 도급 받은 전문소방 업체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,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.

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는 건설업체가, 소방공사는 소방업체가 계약하는 경우, 분리발주로 인정이 되는지?

‘분담이행방식’ 일지라도 분리도급 예외 사항이 아닌 공사 라면 분리도급 위반에 해당됩니다.

건설업, 소방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1개 현장의 소방공사와 소방 외 공사를 각각 도급받는 경우 분리도급에 해당되는지?

소방공사와 타 공종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각각 낙찰, 도급, 계약하는 경우 적합하게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1백만원 이하의 소방공사도 반드시 분리도급 해야하는지?

분리도급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 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도급하여야 합니다.

명확한 입찰공고일이 없는 민간공사의 경우, 어떤 서류로 발주공고일을 알 수 있나요?

민간공사 등 별도 발주(입찰)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, 해당 소방공사 도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.

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효과



국민안전 확보

-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전문적 시공
- 소방공사의 품질 향상

철저한 사후관리

- 책임시공을 통해 신뢰도 향상
- 완벽한 유지관리

중소기업 육성

-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, 균형발전
- 활발한 기술투자 등 경영선순환



분리도급 ▶ 적정공사비 확보 ▶ 우수 자재로 전문시공 ▶ 국민안전 확보 ▶ 중소기업 육성 ▶ 소방산업발전

분리도급의 예외

● 일괄도급이 가능한 경우

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(시행령 제11조의2)으로 정하는 경우 → 분리도급 예외

분리도급의 예외

1. 재난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
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
3.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
4.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
5. 대안입찰, 일괄입찰, 기술제한입찰(실시설계·기본설계)
 - ※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적용받는 발주지만 해당
6.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공사(아래 2개 조건 만족 시)
 - ※ 성질상 분리도급 곤란+문화재수리, 재개발·재건축 등

공정사회 ▶ 국민안전

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, 국민안전 확보!

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으로
국민안전을 확보합시다!



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

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(제21조제2항)에 따라 소방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.

■ 다른 업종의 공사란?

건설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 등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

■ 소방공사는 2020년 9월 10일부터 발주하는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함(법 제21조)



건설공사 등(토목, 건축, 전기 등)



건설업체 등(토목, 건축, 전기 등)

소방공사

분리도급 ↓ 직접계약



소방공사업체

■ 도급이란?(공사발주 ~ 대금지급)

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결과에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



분리도급 위반 시 처벌



○ 분리도급 위반

발주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착공신고 위반

도급인이 분리도급 받은 것으로 착공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과 행정처분(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)

분리도급, 착공신고 위반 시



분리도급 위반 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착공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거나,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짓 신고로 공사업자는 과태료 200만원과 행정처분(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)을 받게 됩니다.

법 제37조(벌칙) 300만원 이하의 벌금

법 제40조(과태료)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법 제9조(등록취소와 영업정지)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

■ 분리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하고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.

▶ 하도급 위반으로 처벌(법 제22조 및 제36조)

법 제36조(벌칙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소방특별조사 및 공사현장 점검 시(수시) 분리도급 위반 사항 소방공무원이 확인

■ 19개 시도 소방공무원 현장점검 단속 실시

※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신고센터 개설·운영(2022년)

통합발주 (일괄도급)의 문제점



일괄도급 ▶ 불공정거래, 저가수주 ▶ 소방산업 악화, 저가시공 ▶ 오작동, 미작동 ▶ 국민안전 위협!

최근 3년간 소방시설 미작동 현황

구분	평균	2018년	2017년	2016년
화재발생대상	21,150	23,937	20,323	19,189
소방시설미작동	6,592 (31.17%)	7,704 (32.18%)	6,109 (30.06%)	5,964 (31.08%)

(출처: 국가화재정보시스템)

분리도급 vs 일괄도급 “현장점검결과”

구분	분리도급	일괄도급
점검대상	11개소	11개소
하자건수	75건	157건
처리 절차	단순 (시공사 직접)	복잡 (원도급사 → 시공사 → 처리)
처리 기간	당일 또는 즉시처리	미보수 또는 1개월 소요

특이사항
 노후시설중 안전 강화 목적으로 발주자가 분리도급 추진
 일괄하도급, 재하도급, 허위 실적신고 등 불법사례 발생
 중대하자 발생 보수요청 하였으나,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미처리되고 있는 현장 확인 됨

■ 분리도급으로 시공된 소방시설은 하자 건수, 보수절차, 처리기간 등 대부분 점검에서 우수함!